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7 발의연월일: 2020. 6. 23.

발 의 자: 안규백·최종윤·백혜련

김민기 · 김승원 · 박홍근

윤준병 · 강대식 · 한기호

문진석 · 김병주 · 홍성국

박성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사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한정하여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는 바, 현재 국방부는 헬기정비사, 심해잠수사, 수중발파사, 항공장구관리사, 폭발물처리사, 국방사업관리사 등 6개의 국가자격증을 운영하고 있음.

한편, 이들 국가자격증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그 국가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하는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국가자격증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형사처벌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상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국가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격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국방부 소관 국가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의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제5항 및 제67조 신설).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4항 중 "증서"를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장(제6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장 벌칙

제67조(벌칙) 제4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
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① ~	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4
교육 수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자격의 취	
득을 증명하는 <u>증서</u> 를 교부하	<u>증</u> 서(이하 "국가
여야 한다.	<u> 자격증"이라 한다)</u>
<u><신 설></u>	⑤ 누구든지 국가자격증을 다
	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
	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신 설></u>	제12장 벌칙
<신 설>	제67조(벌칙) 제4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